

시니어인턴십 참여방법 안내

1 기업 신청

- 1) 붙임2_(신청서)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
- 2) 사업자등록증
- 3)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 확인서
- 4)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운영계획서

*1번~4번 서류 이메일 접수(djs3077@daum.net)

- 5) 붙임3_(협약서) 시니어인턴십 지원 협약서

1p. 기업명 변경, 4p. 참여기업 서명(협약일자 신청서 일자와 동일)

협약서 2부 출력하여 간인 후 발송(2부 전부 발송 필요)

*협약서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필수(원본 필요)

(35235)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51, 3층 기업서비스팀

참여 제외 시니어

-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
-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- ③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
- 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
-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
-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
- ⑦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(대표자)와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- ⑧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
- ⑨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



시니어인턴십 참여방법 안내

2

참여자 채용 및 통보

1) 붙임2_(신청서)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(시니어인턴십) 참여 신청서(참여자용)

2) 붙임3_(동의서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3) 붙임4_(계약서) 표준 근로계약서(서식 변경 가능)

*내부 근로계약서 작성 시 '시니어인턴십 약정기간 3개월' 명시 필요

4) 교육 수료증

*온라인 교육 "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" 이수 후 수료증 발급

혹은 운영기관의 안전교육 이수 후 교육관리 대장 제출(근로개시일에 교육 수료가 어려운 경우)

※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붙임5, 붙임6 추가 제출 필요
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 시 하단 붙임5, 붙임6 제출하지 않아도 됨

근로자 발급

5) 붙임5_(건강보험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

- 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 가입 후 발급

근로자 발급

6) 붙임6_(고용보험)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방법



기업
신청



참여자
채용 및 통보



지원금
신청

시니어인턴십 참여방법 안내

3

지원금 신청

- 1) 붙임2_(신청서) 지원금 지급 신청서
- 2) 4대보험 가입자 명부
*근무기간 3개월 경과한 날 이후 발급 필요
- 3) 기업명의 통장사본
- 4) 임금명세서 3개월 내역
- 5) 붙임3_(이체증) 급여이체확인증 3개월 내역

지원금 유형	전제조건	지원기간	지원내역
인턴지원금	인턴약정체결	최대 3개월	월 급여의 50% 월 최대 40만원
채용지원금	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	최대 3개월	월 급여의 50% 월 최대 50만원

- 인턴지원금 : 참여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경과한 날 이후 신청
- 채용지원금 : 참여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경과한 날 이후 신청
- 장기취업유지금 : 18, 24, 30, 36개월 근무 후 신청(최대 280만원)



기업
신청



참여자
채용 및 통보



지원금
신청